『2025년 EBS 강의노트』 교재 제작 계약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와 _____(이하 "제작협력사"라 한다)는 『2025년 EBS 강의노트』 교재 인쇄(제작) 계약에 관하여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BS"와 "제작협력사"가 『2025년 EBS 강의노트』 교재 발행 사업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제작협력사"는 「2025년 EBS 강의노트 교재 제작」을 위하여 "EBS"의 교재 원고 인수(취합) 및 수정·편집, 표지디자인 기획 및 제작, 인쇄, 제본, 포장, 납품 등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② "제작협력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세부내역은 별첨 "과업지시서"와 같으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EBS"와 "제작협력사"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작협력사"는 "EBS"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전담팀을 숙련자로 구성하여 업무를 주관하여야 하며, 전담인원의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EBS"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상 제작금액 및 계약단가) ① 예상 총 제작금액은_____원(VAT 포함)으로 한다.

② 1책의 강의노트 교재 1부를 제작하는 계약 단가(VAT 포함)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기준단가"라고 한다.

판 형	표지제작(1면당)	본문 제작비(1면당)		제본비(1부당)
		1도(단색)	2도이상(칼라)	
A4(국배판)				

* 1도(단색) 와 2도 이상(칼라)이 혼재되어 제작되는 경우, 전체면수를 2도 이상(칼라) 으로 간주

* 기타 추가 공정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실 거래가를 기준하여 협의 후 적용

③ 제2항의 기준단가는 교재별 1회 발주물량 500부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교재별 제작(발주) 물량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500부 이하	~750부 이하	~1,000부 이하	~1,250부 이하	~1,500부 이하	~1,750부 이하	~2,000부 이하	~2,250부 이하	~2,250부 초과
기준단가	기준단가 × 95%	기준단가 × 90%	기준단가 × 85%	기준단가 × 80%	기준단가 × 75%	기준단가 × 70%	기준단가 × 65%	기준단가 × 60%

제5조(계약보증금) ① "제작협력사"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_____원을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작협력사"는 "EBS"에게 제1항의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로서, 제15조(계약해지) 1항에서 3항까지의 조항에 의한 "제작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EBS"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계약보증금은 "EBS"에게 전액 귀속되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EBS"는 최고(催告)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보증금(지급하여야 할 용역료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현물 등으로 대체 가능)을 환수 및 처분할 수 있다.

제6조(발주방법 등) ① 인쇄물의 발주는 "EBS"의 '발주서' 양식에 의거하여 교재별로 "제작협력사"에게 발주건별로 발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발주할 수 있다.

② 교재별 발주 시기 및 부수는 교재별 판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EBS"가 결정하며, 교재별 1회 최소 발주 부수는 50부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제7조(제작사양 변경 등) ① "EBS"의 교재 개발계획에 의거 전년도 기준의 교재가 폐간되거나 신규교재가 발행 될 수 있으며, 교재 개발 과정 중 사양(규격, 색도, 면수, 지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② 교과별 교재 발행 책 수, 교재 규격, 예상면수 등은 교재개발 과정에서 변동이 많고 제작부수는 판매추이 등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공통 사양서 만을 제공한다.

③ "제작협력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동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 및 인지하고 계약체결에 임하며, 이에 대하여 "EBS"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제작물의 납품) ① "제작협력사"는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납품기한일 내에 "EBS"가 지정한 장소(EBS 물류대행사 등)로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작 공정별 확인 내역(서명날인한 체크리스트) 및 납품내역에 대한 입고 확인 내역(서명날인한 입고증)을 "EBS"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외 대상 교재는 EBS가 정한다.

② "EBS"는 납품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본 계약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③ 필요한 경우(다량의 제작 등) 납품 기일은 "EBS"와 "제작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일단 결정된 납품 기일은 엄수하여야 한다.

④ "제작협력사"는 납품이 지연될 경우 "EBS"에게 지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EBS"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교재포장) “제작협력사”는 교재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댐지를 사용하여 포장(밴딩 작업 등) 후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댐지 제작 및 포장)은 “제작협력사”가 부담한다.

제10조(파본교재처리) ① “제작협력사”는 작업과정 중 파본(제본 오류, 인쇄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교재의 부실, 조잡 등) 교재가 발생한 경우, “EBS”의 조치(추가 제작, 회수 등)에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물류비, 제작비 등) 은 “제작협력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파본 교재 발생으로 인하여 교재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EBS”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을 경우 “EBS”는 “제작협력사”에게 경위서 제출 요청 및 경고(공문) 조치할 수 있다.

③ 수능 연계교재에 한해 경고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기타 교재의 경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EBS”는 관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제작협력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EBS”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인쇄 대금은 매 발주건(교재)별로 “EBS”의 발주서에 의한 인쇄물품의 납품 완료한 후, 교재별 면수 및 수량 등을 정리하여 제4조에 정한 단가를 적용한 “대금산출 청구(계산)서”를 월별로 발행하되, 해당 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작협력사”가 제출한 “대금산출 청구(계산)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제작협력사”의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EBS”가 지급한다. 다만, “EBS”의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제작협력사”와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 체결 후 계약단가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등으로 계약단가를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작협력사”는 “EBS”의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EBS”는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EBS”는 계약 종결 후에 제1항 및 제2항의 조항에 의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작협력사”에게 지급할 지급금이나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 또는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제작협력사”는 “EBS”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작협력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지체상금 변상) ① “제작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예정된 기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인쇄 납품 등)를 지체 또는 완료치 못하였을 경우, “제작협력사”는 지체 1일당 제4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EBS”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예외사항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EBS”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지체상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EBS”가 “제작협력사”에게 지급할 월별 인쇄대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전담자 및 관리감독) ① “제작협력사”는 계약체결 시 본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직원 명단을 “EBS”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담자로 하여금 원고 인수 및 납품 등에 관한 업무진행을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계약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관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EBS 감리자는 “EBS”를 대신하여 “제작협력사”에 상시 거주하여 인쇄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리·감독하는 자로써, “제작협력사”는 EBS 감리자에게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작협력사”가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진행 차질 및 교재 품질(파본 포함)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EBS”는 관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지)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요청은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시 “EBS”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제작협력사”의 귀책사유 또는 “제작협력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 “제작협력사”가 지속적으로 “EBS”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한다고 “EBS”가 인정할 경우
3. “제작협력사”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의 물품에 대한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EBS”의 정책변경 등으로 “제작협력사”와의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EBS”가 판단한 경우

② “EBS”가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EBS”는 “제작협력사”에게 해지 시까지의 결과물에 대한 “제작협력사”의 실 투입 비용을 보상한다. 이때 “제작협력사”는 “EBS”의 요구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폐기하거나 “EBS”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종료시 의무사항) ①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제작협력사”가 더 이상 “EBS”와 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제작협력사”는 “EBS”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강의노트 교재 원고 등 관련 데이터(디지털 파일 포함) 일체를 “EBS” 및 “EBS”가 지정하는 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작협력사”는 “EBS”가 발주한 물량 외에는 재고를 일절 보관하면 안 되며, 만약 인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제작분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EBS”에게 폐기 완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작협력사”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제작협력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EBS”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환수와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권리 의무 양도 금지) “제작협력사”는 “EBS”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으로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EBS”와 “제작협력사” 쌍방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1조(기타) ① 별첨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며, 본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계약기간 중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EBS”와 “제작협력사”가 협의하여 추가로 약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EBS”와 “제작협력사”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EB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사 장 김 유 열 (인)

“제작협력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